

# 학과평가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의 목적은 서울신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과평가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**제2조 (학과평가의 취지)** 학과평가는 각 학과의 지표에 대한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현황 파악과 이를 통한 학과의 발전, 나아가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. <개정 2019.03.27.>

**제3조 (주관부서)** 학과평가는 평가지원실에서 시행하며, 그 결과의 활용은 기획처에서 주관한다.

## 제 2 장 학과평가위원회

**제4조 (학과평가위원회)** ① 학과평가 시행을 위하여 학과평가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평가지원실장으로 하며, 4대 계열(사회, 신학, 예능, 어문) 대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계열구분은 별표1과 같다.

③ 간사는 평가지원실 담당자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룬다.

1. 학과평가 지표에 관한 사항
2. 학과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
3. 학과평가 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학과평가와 관련된 사항

## 제 3 장 운 영

**제5조 (평가대상)** 학과평가는 본교의 각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하며,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학과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① 재학생이 존재하지 않는 학과
- ② 편제미완성 학과
- ③ <삭제 2019.03.27.>

**제6조 (평가지표)** ① <삭제 2019.03.27.>

② 평가지표는 별표2와 같다. <개정 2019.03.27.>

**제7조 (평가주기 및 시기)** 학과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하며, 매년 1학기 초에 전년도 1,2학기에 대해 평가한다.

**제8조 (평가방법)** 평가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3의 기타세부내용에 따르며,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평가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. <개정 2019.03.27.>

**제9조 (순위)** 평가결과를 토대로 학과 순위를 정한다.

**제10조 (평가결과 활용)** 평가결과는 인센티브 부여, 학생정원조정, 장학금 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은 학과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폐한다.

### 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은 2017학년도 학과평가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<별표1> 학과평가의 계열 구분

계열	어문	사회	예능	신학
학과	영어, 일본어, 중국어	사회복지, 유아교육, 보육, 관광경영	교회음악, 실용음악	신학, 기독교교육

<별표2> 평가지표 및 배점 <개정 2019.03.27.>

평가항목	배점	산식	기준일자	비고
1. 재학생충원율	30	재학생수(정원내)÷편제정원	당해연도 4.1	정보공시
2. 신입생충원율	19	입학자수(정원내)÷모집인원(정원내)	당해 학년도	정보공시
3.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	7	학과전임교원 (강의시수계÷책임시수계)	당해연도 1,2학기	배점 축소
4. 강의평가 평균점수	11	소속 전임교원 전공과목 강의평가 평균점수	당해연도 1,2학기	수강인원 10명이하, 80명 이상 강좌는 제외
5. 학생상담 실적	11	학과전임교원 상담건수 계÷학과 전임교원 수	당해 연도	1인당 연간 최대 건수 : 60건
6. 학과 만족도	11	학과별 평균점수로 T점수 산출	당해연도	재학생만족도 조사 중 학과에 대한 문항만 반영
7. 교육원가	11	-	당해 연도	기획처

<별표3> 기타세부내용 <개정 2019.03.27.>

<p>○ 평가방식 -교내상대평가: 교내 타 학과의 지표와 상대평가하여 T값 반영</p> <p>○ 상대평가 지표 산식 ※ T점수 산출식 : <math>z = \frac{X-m}{a}</math> (X= 지표값, m= 평균, a= 표준편차), <math>T = 10z + 70</math> (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T값 산출식 준용) ※ 지표별 최저점수(20점) 적용</p> <p>○ 주야간이 함께 있는 학과는 주간에 대해서만 평가</p> <p>○ 표준편차가 발생하지 않는 지표는 만점 부여</p> <p>○ 업적평가의 교원 소속은 당해연도 4.1. 기준</p> <p>○ 교육원가는 도출 방식이 결정된 후 반영(그 전에는 배점 만점 부여)</p>
---